

「건축법」 제80조 제5항은 재량 규정인지 [경기도, 관원질의]

1. 경기도 건축디자인과-4452(2022.2.28.)호 관련입니다.
2.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
가. 질의사항

- 「건축법」 제80조제5항에 대하여 재량행위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

나. 검토의견

- 「건축법」 제80조제1항에 따르면, 허가권자는 「건축법」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“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” 규정되어 있으므로, 시정명령 이후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허가권자는 「건축법」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이후에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「건축법」 제80조제1항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- 따라서, 「건축법」 제80조제5항의 조문은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, 최초의 시정명령 이후의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처분이 허가권자의 재량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 (갑설)
- 아울러, 구체적인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. 끝.